

1. 개정이유

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원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등을 정하고, 공무원 근로자의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신설(안 제8조의2)
- 나. 상담사의 정기 순환보직 주기 변경 및 순환 방법 신설(안 제7조 제3호~제5호)
- 다. 어려운 용어 정비
 - ‘잡서칭’ 삭제(안 제4조제4호)
 - ‘컨설턴트’ ⇒ ‘상담사’로 변경(안 제12조제3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보훈부훈령 제 호

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잡서칭 등의 채용정보”를 “채용정보 등의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센터장은 소속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하고, 상담사의 업무를 2년 주기로 팀을 달리하여 조정한다. 다만, 채용자격이 다른 창업지원팀, 해외취업상담사에 대해서는 팀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센터장은 2년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5. 팀간 보직 순환 대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팀에 장기 근무한 상담사부터 순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.

제8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브이넷 운영

제2장제2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공무원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) 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원인 팀장(이하 “팀장”이라 한다)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기업의 채용계획, <u>잡서칭 등의 채용정보</u> 수집 및 제공 5. ~ 8. (생략)	제4조(센터의 기능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채용정보</u> 등의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담당직무) 센터의 공무원과 근로자의 담당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3. 센터장은 소속센터 직원들의 <u>직무분장을 조정한다. 3년이 상 계속하여 동일직무를 수행한 업무담당자의 직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.</u>	제7조(담당직무)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센터장은 소속센터 직원들의 <u>업무를 분장하고, 상담사의 업무를 2년 주기로 팀을 달리하여 조정한다. 다만, 채용자격이 다른 창업지원팀, 해외취업상담사에 대해서는 팀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센터장은 <u>2년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</u> 5. <u>팀간 보직 순환 대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팀에 장기 근무한 상담</u>
<신설>	
<신설>	

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, 직무 성과, 업무수행 태도,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,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(지)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 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해당 보훈(지)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

③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,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담당컨설턴트”를 “담당 상담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팀장 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, 그 보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.

	<u>사부터 순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.</u>
제8조(직무분장) ① ~ ⑥ (생략)	제8조(직무분장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본부 전산·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센터 웹사이트(이하 “브이넷”이라 한다) 운영</u>	4. <u>브이넷 운영</u>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공무직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) 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(이하 “팀장”이라 한다)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, 직무성과, 업무수행 태도,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,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(지)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.</u>
	<u>② 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해당 보훈(지)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</u>
	<u>③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,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</u>

	<u>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.</u>
제12조(지원신청) ①·② (생략)	제12조(지원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브이넷 신규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.	③ ----- -----.
1. 브이넷 신규회원 가입 후 1일 이내에 <u>담당컨설턴트</u> 배정	1. ----- ---- <u>담당 상담사</u> 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